

바로 보는 법규·정책

Regulation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FAQ

2025.05.07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바로 보는 법규·정책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FAQ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이번 <바로 보는 법규·정책>은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소개합니다.⁽¹⁾

Timeline

- 2025년 3월: 입법예고 및 평가위원회 구성
- 2025년 4~5월: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안) 기업 설명회
- 2025년 6~7월
 - 지정유예 희망 기업의 신청 접수
 - 평가실무 지원기관 평가결과 실무안 확정
- 2025년 7~10월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확정
- 2025년 10~11월
 - 증권선물위원회 주기적 지정제 유예대상 확정
- 2027년: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착수
- 2028년: 재검토 결과에 따른 법·제도 개선 추진



주기적 지정 유예대상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新 외감법 시행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에 한함

(1) 이번 <바로 보는 법규·정책>은 하기 자료의 '잠정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ource: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설명회 자료", 2025.4.28

바로 보는 법규·정책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FAQ

주요 문의사항 (FAQ)

Q1. 신청기간 및 신청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 ▶ 25년부터 27년까지 3년 동안 매년 6월에 신청 가능
- ▶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음
 - ✓ 25년에 신청했으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한 회사는 26년에도 신청이 가능

(참고) 27년부터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한 원점 재검토 착수
28년에는 재검토 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 추진 예정

Q2. 新외부감사법(18년 11월) 시행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 ▶ 2018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법 제11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를 뜻함
 - ✓ 12월 결산법인인 2019 사업연도 또는 이후 사업연도에 지정감사를 받은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자격을 갖춤

바로 보는 법규·정책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FAQ

주요 문의사항 (FAQ, 계속)

Q3. 감사위원회의 회계전문가와 회계·감사지원조직의 회계전문가는 동일한지?

- ▶ **감사위원회 회계전문가**
 -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계 전문가
- ▶ **회계·감사지원조직의 회계전문가**
 - ① 감사위원회 회계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자
 - ③ 회계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자
 - ④ 그에 준하는 회계전문성을 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자

(참고) 회계전문가 판단 원칙 및 요건(안)(7쪽)

Q4. 회계감사지원조직의 구분 및 인정 범위는?

- ▶ **내부회계관리제도 총괄부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인정(조직명, 별도 조직 구성 여부 불문)
- ▶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 ①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활동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며
 - ② 그 업무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 ③ 독립적인 조직(부서, 팀 등)을 운영하는 경우만 인정

바로 보는 법규·정책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FAQ

주요 문의사항 (FAQ, 계속)

**Q5. 현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로
배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 회사는 평가분야 중 다음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확약서 제출이 가능하며, 일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 ① 감사기능 독립성
 - ② 감사기구 전문성
 - ③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 ▶ 평가위원회가 확약서 제출 항목에 대해 배점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

**Q6. 지정유예 대상회사로 선정된 후 유예요건
유지대상 항목은 무엇인지?**

- ▶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지정유예 대상으로 선정 시 충족된 평가항목을 유지해야 함

바로 보는 법규·정책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FAQ

주요 문의사항 (FAQ, 계속)

Q7. 지정유예 대상회사로 선정된 후 회사는 어떠한 사후보고를 해야 하는지?

- ▶ (정기보고) 모든 지정유예 대상회사는 유예기간 종료될 때까지 유예요건을 유지해야 함
 - ✓ 매년 지정유예요건 준수상황보고서를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 ▶ (수시보고) 모든 지정유예 대상회사는 유예기간 종료될 때까지 유예요건 미준수 발생 시 수시보고해야 함
 - ✓ 사유 발생 시 지정유예조건 미준수 사항 보고서를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 ▶ (이행보고)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약속서를 제출하여 조건부 지정유예 대상회사로 선정된 경우 이행보고 필요
 - ✓ 이행 시기 도래 시 이행결과보고서를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

바로 보는 법규·정책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안) FAQ

[참고] 회계전문가 판단 원칙 및 요건(안)

- **감사위원:** 상법 시행령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중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
 - 회계 관련 경력이 상당 비중을 차지 (학력은 회계분야로 요구)
- **지원조직:** 감사위원 요건보다는 완화하되, 회계전문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자격·학력·경력 요건을 설정
 - 그 외 회사가 제출한 회계전문성 관련 자료는 평가위원회 검토하여 인정 가능

상법 시행령	감사위원회		회계·감사지원조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① 회계전문가(안)	② 회계전문가(안)
제1호	한국공인회계사 경력 5년 ↑	좌동	한국공인회계사 자격
제2호	연구기관·대학근무 회계·재무 분야 경력 5년 ↑ + 회계·재무 관련 석사	좌측에 해당하면서, 회계경력 3년 ↑ + 회계 관련 석사	회계학 박사 또는 연구기관·대학 근무 회계경력 3년 ↑ + 회계관련 석사
제3호	상장사 회계·재무업무 경력 임원 5년 ↑, 직원 10년 ↑	좌측에 해당하면서 회계업무 경력 임원 3년 ↑, 직원 7년 ↑	상장사 회계 업무 경력 임원 3년 ↑, 직원 7년 ↑
제4호	금융기관, 정부 등 경력 회계·재무업무 또는 관련 감독업무 경력 5년 ↑	좌측에 해당하면서, 회계업무 또는 관련 감독 업무 경력 3년 ↑	금융기관, 정부 등 회계업무 또는 관련 감독 업무 경력 3년 ↑
제5호	금융업권협회 경력 회계 재무분야 경력 5년 ↑	좌측에 해당하면서, 회계분야 경력 3년 ↑	금융업권협회 경력 회계분야 경력 3년 ↑
	N/A	N/A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등 그 외 평가위원회가 개별 검토· 인정(차등 점수 부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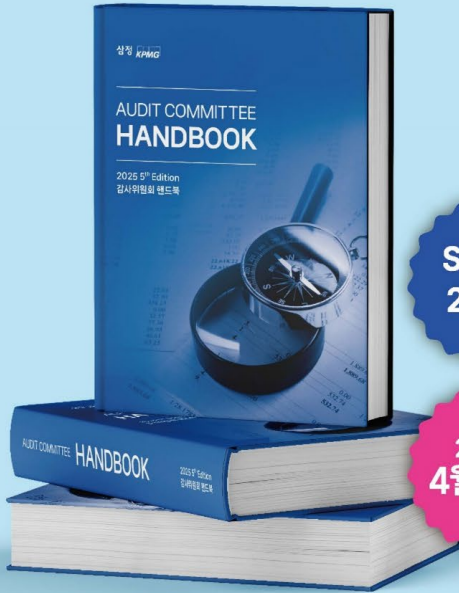
감사(위원)를 위한 「감사위원회 핸드북」 4차 개정

신청 안내



감사위원회와 함께한 10년,
더욱 전문적인 실무 지침서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4월, 회계법인 중 최초로 설립된 삼성KPMG ACI는 지난 10년간 축적한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무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핸드북」 4차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Since
2015

2025
4월 출간

AUDIT COMMITTEE HANDBOOK

I장
기업거버넌스

AUDIT COMMITTEE HANDBOOK

II장
감사위원회 제도

AUDIT COMMITTEE HANDBOOK

III장
감사위원회 운영

AUDIT COMMITTEE HANDBOOK

IV장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AUDIT COMMITTEE HANDBOOK

별권
재무보고감독

- 감사(위원)의 필독서! 최신 규정과 Best Practice 반영
- 실무 중심의 구성! 감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 수록
- 더욱 체계적인 접근! 내부통제, 위험관리, 회계감사까지 폭넓은 내용
- E-book 서비스 제공! 아카데미, 카카오톡 친구추가 후 '핸드북 보기' 메뉴
- 찾아가는 핸드북 서비스! 핸드북 이해와 적용을 위한 온/오프라인 강의 제공